

계약해지 합의서

본 계약해지 합의서(이하 "합의서"라 한다)는 아래 당사자 간에 체결된 국제결혼중개 계약의 해지 및 환급 조건에 관하여 상호 합의한 바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.

제1조 (당사자)

사업자 : 씨엔디국제결혼

대표자 : 염치열

주소 : 부산시 사하구 다송로72번길 71

회원 :

주소 :

연락처 : 010- -

제2조 (계약해지 사유)

회원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기존 체결한 국제결혼중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며, 사업자는 이를 승인한다.

제3조 (적용 조항 및 위약금 공제)

본 해지는 중계약관 제12조 제4항 “맞선 이후 해지할 경우 총비용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반환” 조항을 적용한다.

따라서,

총 계약금액 : 금 만원

위약금(총비용의 50%) : 금 만원

환급금 : 금 만원으로 한다.

제4조 (환급 및 정산)

사업자는 본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3일 영업일 이내에 제3조에 따른 환급금을 회원에게 반환한다.

환급금 반환 후 본 계약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회원 간에는 일체의 금전적 청구권 및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.

제5조 (기타)

본 합의서는 당사자 간의 진정한 합의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, 작성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본 합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서 원문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.

제6조 (서명)

본 합의서의 내용을 상호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여 당사자가 각각 서명·날인한다.

작성일자 : 202 년 월 일

사업자

상호 : 씨엔디국제결혼

대표자 : 엄치열 

회원

성명 : (서명/도장)